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저가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벌여 계약금액을 더 낮춘 ○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 중공업 도장 철제설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공사기간 2006년 6월 30일~2007년 4월 27일)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후, 추가 가격협상을 벌였다.

4개 업체의 최저입찰액은 모두 16억3,482만원이었지만, 결국 ○엔지니어링은 이보다 5,000여만원이 낮은 15억8,3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행위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저가입찰을 통해 결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이 다시 깎이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직권조사를 강화한 후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으나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들은 이렇게 공사대금이 깎여도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한 직권조사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도 건설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